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의 안 번 호 2944

남궁역 의원 (국민의힘, 동대문3)

- □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 남궁역 위원입니다.
- □ 본 의원 외 22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 레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- □ 최근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녹색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, 서울식물원을 비롯한 수목원의 기능을 기존 수목유전자원의 수집·보존 및 연구 중심에서 시민의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.
- □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수목원을 통한 시민의 휴식과 여가 증진을 위한 시책 마련 노력을 명시하여, 정책적 방향성을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(안 제3조 제3항).
- □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